

제 426 호

1974. 1. 15.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편집 : 문화공보실장 김진호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 시보

차 례

◎ 조 례

제 813 호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 ..... 3

◎ 고 시

제 206 호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 ..... 7

제 208 호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 ..... 9

제 1 호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 ..... 11

제 2 호 도시계획시설(소로)결정및지적승인 ..... 13

◎ 공 고

제 4 호 도시계획(학교)사업일부완료공고 ..... 18

제 5 호 74 쓰레기특별청소지역지정공고 ..... 23

◎ 사 령 ..... 25

◎ 정 성 ..... 29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조 례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 징수조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74. 1. 11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조례제 813 호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 징수조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등 징수조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 1 조 ( 목적 ) 이 조례는 하천법 제 33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 (이하 '요금'이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요금의 기준 ) 요금은 별지 요금 산정기준표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 3 조 ( 요금의 감면 ) 시장은 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 (이하 '점용등'

이라 한다)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 및 하천공사 (하천관리행위)의 경우와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지방세법 제 206 조의 규정에 준하여 감면할 수 있다.

제 4 조 (요금등의 산정방법) 요금등의 산정은 다음 각호의 표준에 의한다.

1. 요금등은 연액으로 정하되 그 요금등의 기간이 1년미만일 때에는 월할로 하고 1개월미만일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다만 허가기간이 1년미만이라도 동일인에게 계속하여 점용등의 허가를 할 때에는 이를 연액으로 계산한다.
2. 전호의 규정에 의한 요금등의 기간이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요금의 월액의 반액으로 한다.

3. 점용등의 산정에 있어서 1㎡ 또는 1㎡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 또는 1㎡으로 계산한다.

제 5 조 (요금의 징수시기) ①요금은 일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점용등의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②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및 기타 그 성격상 선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그 점용료의 납부시기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 1.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농지세의 납기
- 2. 기타 그 성격상 선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용 : 시장이 정하는 납기

제 6 조 (이미 납부한 요금의 반환) 이미 납부한 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하천법 제 68 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 7 조 (준용) 요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 8 조 (징수의 위임) 시장은 요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9 조 (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기타 절차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요 금 산 정 기 준	
구 분	산 정 기 준
1. 수차를 제외한 공작물 설치 (국유 또는 자치단체소유로 귀속되는 공작물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액점용면적에 대한 등록세법에 의한 인근 유사지의 시가표준액 (이하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6
2. 수차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 및 인수	연점용 면적평당 100원과 절구 1개당 300원의 합산액.
3. 토지 (하천부지) 의 점용	<p>1. 공작물의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액 점용 면적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p> <p>2.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가. 연액 점용면적에 대하여 감류농지세 해당농업의 경우는 인근유사토지대장등급에 의한 기준수확량의 100분의 25 내지 100분의 30 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  나. 울류농지세 해당농업의 경우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p> <p>3.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액 점용면적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 다만 인근유사지가 없을 경우는 수확예상액의 100분의 40</p> <p>4. 목축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액 점용면적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 다만</p>

	인근유사지가 없을 경우에는 연액 평당 20 원
	5. 광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액 평당 10 원 다만 하천구역내에 토석 사력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 8 호의 요율을 가산한다.
	6. 채빙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평당 20 원 전 1 호에 준한다.
4. 하천 부속물의 점용	
5. 유수의 점용 (수차 수침을 제외한다)	1. 공업용수 (화력발전을 위한 인수포함) : 월액 $m^3/sec$ 당 20,000 원 2. 농업용수 : 연액 $m^3/sec$ 당 10,000 원 3. 선박의 운전을 위한 하수의 이용 수익에 상액의 100 분의 30 또는 인근유사지의 시가표준액의 100 분의 6. 4. 기타의 점용 및 사용 : 전 각 기준에 의거 선정.
6. 지하의 유수채취	전 5 호의 기준에 준한다.
7. 배수 (주수)	1. 공업용수의 배수 : 월액 $m^3/sec$ 당 15,000 원 2. 기타용수의 배수 : 연액 $m^3/sec$ 당 10,000 원
8. 토석, 사력의 채취	생산지의 시가에서 채취비와 상차비를 제외한 금액의 100 분의 70 다만 수요자 많은 지역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하천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58 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한다.
9. 축목, 갈대, 목초 및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점용이 수반하지 않는 것은 전 8 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3 호에 준하여 산정한다.
10. 스케이트장, 유선장	영업세과세표준액 (이를 알수 없을 때에는 시가표

유선대기장, 탈의장 (매점포함)	준액) 의 100분의 6
11. 전 주	연액 단주는 주당 150 원, H주, 탐주는 주당 300 원
12. 기타의 점용 또는 사용.	천 각호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206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도로) 중 건설부고시제 2493호 (66. 6. 21) 및 건설부 고시제 198호 (71. 4. 7) 로 결정된 광로 1류 13호의 15개노선에 대하여 지적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제 13조와 건설부고시제 123호 (73. 4. 4) 의 권한위임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및 출장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3. 12. 24

서울특별시장

지적승인조서 : 별첨조서참조

별첨도면 표시와 같은

도면은 서울특별시청과관할구청에보관함

## 로 선 조 서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 장	기 점	중 점
광로		13	70	(4,750) 1,237	대치동 50(구획정리제)	광로 28
"		18	40	(6,500) 2,164	도곡동 45(구획정리제)	광로 28
"		19	"	(42,500) 4,472	포이동 9	삼전동 192
"		22	70	(2,500) 1,806	둔촌동 514	둔촌동 (대 3-69)
"		23	"	(2,500) 1,806	방이동 195	오금동 (대 3-69)
"		24	"	(18,500) 15,442	행신리 652	효자리 53
"		28	"	(13,000) 10,000	천호동 (광로 5)	엄곡동 338(지구제)
대로	1	20	35	(4,700) 1,726	대치동 245	개포동 (광로 28)
"	"	22	"	(8,800) 516	송파동구획정리지구제	방이동 (광로 28)
"	"	23	"	(10,250) 4,315	포이동 5-3	명일동구획정리지구제
"	"	28	"	(2,800) 3,348	신도면삼층리	원흥리 17
"	"	31	"	(3,250) 1,363	삼전동구획정리지구제	광로 28 호
"	2	27	30	(6,250) 4,039	가락동 76(지구제)	세곡동 158
"	"	30	"	(7,250) 840	도곡동 69-4(지구제)	도곡동 207-4
"	"	46	"	(2,800) 2,722	개포동 (광로 28)	내곡동 (광로 33)

◎서울특별시고시제 208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중  
건설부 고시제 2493 호 (66.6.21)  
및 건설부 고시제 198 호 (71.4.7)  
로 결정된 광로 1 류 13 호의 15 개  
노선에 대하여 지적을 다음과 같  
이 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  
와 건설부 고시제 123 호 (73.4.4)

의 권한위임사항에 따라 이를 고  
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국·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및 출  
장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3.12.26.

서울특별시장

지적승인조서 : 별첨조서참조      도면은 서울특별시청과 관할구청에  
별첨도면표시와 같음. 보관함.

로 선 조 서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 장	기 점	중 점
대로	3	40	25	(13,040) 2,233	성수동2가(대2-25)	답십리동 12
"	"	63	"	(4,050) 4,071	암사동(중2-123)	하일동(대3-68)
"	"	64	"	(3,650) 1,865	명일동구획정리지구계	암사동강변(중2-12)
"	"	65-1	"	(1,100) 1,180	둔촌동(대3-69)	서부면감일리(대2-23)
"	"	65-2	"	(1,000) 1,307	문정동(대3-69)	장지동(대2-33)
"	"	66	"	(1,000) 1,030	오금동(대3-69)	마천동시계(대2-33)
"	"	67	"	(2,250) 2,245	오금동(광로28)	거여동(대2-33)



등급	류별	번호	특원	연 장	기 점	중 점
대로	3	68	25	(1,250) 1,163	상일동 (광로 5)	상일동 (대 3 - 63)
"	3	69	"	(12,250) 12,073	울현동 (대 2 - 27)	암사동강변 (중 2-123)
"	3	70	"	(7,500) 5,443	대치동 75	광로 29 호
"	3	71	"	(6,250) 1,964	도곡동산 7	개포동 (광로 28 호)
"	3	77	"	(3,250) 578	도곡동 (광로 18)	도곡동 217 ~ 3
상로	1	85	20	(2,250) 782	삼전동 77-82	수서동 (광로 28)
"	1	98	"	(4,500) 650	원지동 (지구제)	서초동 (지구제)
"	1	140	"	(2,500) 2,343	오금동 (광로 33)	문정동 (광로 29)
"	2	102	15	(4,000) 2,938	명일동 (대 2 - 6)	길 동 54 (지구제)
"	2	103	"	(3,500) 1,663	명일동 266	광 로 22 호
"	2	106	"	(3,000) 2,478	풍납동 (중 2 - 123)	대 3 - 69
"	2	128	"	(500) 506	풍납동 (중 2 - 123)	풍납동 241
"	3	65	12	(2,000) 2,300	상일동 (광로 5)	하 일 동

28-7

◎ 서울특별시고시 제 1 호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

1. 당시 도시계획시설(도로) 중 건설부 고시제 2493 호(66.6.21) 및 건설부 고시제 198 호(71.4.7)로 결정된 광로 1 류 19 호의 28 개로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 건설부 고시

제 123 호(73.4.4)의 권한위임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및 출장소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4. 1. 11.

서울특별시장

지적승인 조서 : 별첨조서참조 도면은 서울특별시청과 관할구청에 별첨도면표시와같음(생략) 보관함.

로 선 조 서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 장	기 점	종 점
광로	1	19	40	(42,500) 6,795	삼월동 지구계 방화동 대 2-41	대 3-88 교점 김포가도
대로	1	30	35	(3,000) 520	대방동대 1-6	여의도 윤중계
	2	28	30	(8,500) 650	반포동대 1-21	서초동 지구계
	2	35	30	(12,250) 6,973	남태령 시계	과천면 시계
	"	37	30	(6,250) 2,516	구로동대 2-16	신정동대 2-36 교점
	"	38	30	(7,250) 525	화곡동 지구계	화곡동 지구계
	"	40	30	(2,500) 828	오정면 고강리 대 3-84 호	오정면원종리 지구계
	3	26	25	(9,000) 1,260	이촌동 아파트앞	서빙고역앞
	"	43	25	1,920	전농동 광장	면목동 지구계
	"	60	25	(9,250) 5,803	공능동대 3-13	창동 지구계

2275

10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 장	기 점	중 점
대 로	3	82	25	(500) 460	시흥동 광 15 호	시흥동중 2 - 79 교점
	"	87	"	(4,500) 2,140	광명 아파트앞	광명리 시계
	"	91	"	(2,200) 2,166	신도면 효 자리 광 24 호 교점	신도면 시계
중 로	1	81	20	(8,750) 7,554	공능동 중 1 - 83 호	삼계동 시계
	"	99	"	(1,000) 1,156	문원리 중 1 - 101 호	문원리 대 2-4 5 호
	"	101	"	(2,000) 2,240	관문리대 2 - 35 호	문원리 대 2-45 호
	"	105	"	(2,500) 811	신림동 지구계	신림동 지구계
	"	106	"	(1,500) 210	봉천동 지구계	신림동 대 3 - 48 호
	"	110	"	(1,600) 1,275	시흥동 중 2 - 79 호	소하리 중 1 - 112 호
	"	111	"	2,600) 1,335	독산동 중 1 - 114 호	하안리 중 1 - 112 호
	"	121	"	(3,750) 530	방화동 중 1 - 122 호	방화동 649-5
	"	125	"	(1,800) 1,770	상암동 중 1 - 126	상암동 중 1 - 138
	2	16	15	(2,100) 1,240	오스카극장동측	전농동 시장
	"	79	"	(10,500) 7,991	구로동 독산동 중 1 - 111	가리봉동 시흥동시계
	"	110	"	(270) 324	봉천동 대 3 - 48 호	신림동 지구계
	"	114	"	(5,250) 2,668	구로동 대 3 - 49 호	가리봉동 50 - 6
	"	117	"	(800) 862	철산리 대 3 - 86 호	철산리 중 1 - 112 호
	"	127	"	850	서울상대옆	대 1 - 13 호 교점
"	3	71	12	(3,250) 260	동촌동 지구계	내발산동 지구계
대 로	2	45	35	(8,225) 7,972	양재동 산 73-1	파천면 문원리

◎ 서울특별시고시제 2 호

도시계획시설 (소로) 결정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구역중 암사지구의 4 개지구의 도시계획시설 (소로) 을 다음과같이 결정및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제 12 조 및 동법 제 13 조의 규정과 건설부 고시제 123

호 (73.4.4) 의 권한위임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4. 1. 14

서울특별시장

가. 지구 조 서

지 구 명	동 명	비 고
암 사 지 구	암 사 동 , 천 호 동	
면 목 지 구	면 목 동	
성 수 지 구	성 수 동	
반 포 지 구	반 포 동 , 서 초 동	
신 정 지 구	신 정 동 , 신 월 동 , 고 척 동	

별첨 : 서울도시계획도로확정조서별첨, 서울도시계획확정도면별첨, 별첨도면표시와같은 (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및관할구청에 보관함

로 선 조 서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 장	기	집	중	점	비 고
소로	2	1	8	400	반포동산	45 립	산	40-1 립	반포지구
소계				400					
소로	3	1	6	120	반포동	485-6 대		473-5 답	반포지구
		2	6	140		493-3 답	산	42 립	
		3	6	80		500 답		500 답	

등급	부별	번호	품 원	연 장	가	점	중	점	비 고
소로	3	4	6	330		512 전		537 전	
소계				740					
소로	4	1	4	90	산 51 - 1	림	산 51-1	림	반포지구
		2	4	90	493 - 3	답	492	전	
		3	4	58	산 52	림	546	전	
소계				238					
소로	3	1	6	62	656-642	대	656-727	전	성수지구
		2	6	274	636-641	대	656-755	전	
		3	6	260	656-705	전	5 - 1	전	
		4	6	120	656-515	잡	656-516	전	
		5	6	125	8 - 1	대	656-93	대	
소계				841					
소로	2	1	8	84	면목동 526	전	1089 - 4	대	면목지구
		2	8	70	" 1065	전	506 - 14	대	
		3	8	320	" 777	전	산 570	림	
		4	8	32	588 - 4	전	588 - 4	전	
소계				506					
소로	3	1	6	152	534 - 60	대	582 - 15	대	
		2	6	145	1326 - 4	대	534 - 47	대	
소계				297					
소로	1	1	10	392	암사동 340-2	대	암사동 539-1	전	암사지구
		2	10	400	" 315-2	잡	526-57	답	
		3	10	105	" 539-1	전	535-1	대	
소계				897					
소로	2	1	8	72	암사동 582-1	전	584	전	
		2	8	72	" 583-3	전	586	잡	
		3	8	72	" 495-1	잡	494-1	잡	

28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	점	종	점	비고		
소로	2	4	8	462	496	전	577	전			
		5	"	323	550	전	571	전			
		6	"	564	590	전	505	잡			
		7	"	705	529-1	대	375-31	대			
		8	"	636	287-1	대	363	잡			
		9	"	615	253	답	366-1	답			
		10	"	380	308	잡	286-2	답			
		11	"	380	305-2	전	286-4	대			
		12	"	387	298-2	대	286-12	대			
		13	"	150	390-5	대	379-4	대			
		14	"	221	571	전	582-2	전			
		15	"	304	566-2	전	582-4	잡			
		16	"	426	496	전	316	대			
		17	"	314	334-5	전	550	전			
		18	"	386	534	답	296	전			
		소계				6,469					
		소로	3	1	6	210	암사동 602	전	암사동 214	대	
				2	"	422	602	전	549-1	전	
3	"			146	551-2	전	544	답			
4	"			184	334-2	전	321-2	답			
5	"			116	332	전	332	답			
6	"			135	324-1	대	321-1	전			
7	"			331	321-3	답	329-2	대			
8	"			371	299-1	전	340-6	대			
9	"			310	355-2	전	331-1	전			
10	"			184	368-1	대	363-5	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	절	종	점	비고
소로	3	11	6	107	암사동 357-1	전	암사동 364-23	대	
		12	"	240	398	전	" 402-9	대	
		13	"	186	569-1	전	" 602	전	
		14	"	296	549-1	전	" 389-4	전	
소계			3,238						
소로	4	1	4	20	암사동 399-9	대	암사동 399-9	대	
소계				20					
소로	2	1	8	1,434	개봉동 418-2	구	신월동산 140-3	임	
		2	"	230	" 104	담	개봉동 241-98	대	
		3	"	70	신정동 735-1	담	신정동 734-2	전	
		4	"	880	신정동 756	담	신월동산 125-4	임	
		5	"	375	신정동 760-1	전	신정동 606-3	담	
		6	"	400	신월동 140-2	임	신정동산 125-4	임	
		7	"	620	신정동 743	담	신월동산 142	임	
		8	"	660	" 산 135	임	신정동 125-2	임	
		9	"	840	교척동 10-7	대	교척동 233-1	전	
		10	"	390	" 194-4	담	" 1-4	전	
		11	"	730	신정동 634	전	신정동 717	전	
		12	"	240	" 738	담	개봉동산 13-6	전	
		13	"	220	개봉동 416-2	구	개봉동 241-148	대	
		14	"	235	개봉동 98-26	대	개봉동 233-144	대	
		15	"	64	신정동 733-4	담	신정동 759	전	
		16	"	50	신정동산 115-4	임	신정동산 115-4	임	
		17	"						
소계			7,438						

29-16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 장	기	점	종	점
소	3	1	6	680	개 봉동 산 13-6	임	개 봉동 122-4	전
		2	"	64	" 241-145	대	" 241-10	대
		3	"	150	" 166-2	대	" 246-16	대
		4	"	150	" 110	답	" 148-160	대
		5	"	150	" 108-1	답	" 250-8	전
		6	"	80	신정동 726	답	신정동 724	전
		7	"	500	" 719	답	" 739-2	답
		8	"	325	" 747	답	" 818	답
		9	"	170	" 764	답	" 807-1	답
		10	"	190	" 산 123	답	" 772-1	답
		11	"	40	신월동 652-2	답	신월동 652-3	답
		12	"	980	신정동 산 142-1	임	신정동 산 125-1	임
		13	"	165	" 125-4	임	" 125-1	임
		14	"	270	고척동 199-1	전	고척동 168-1	대
		15	"	140	" 196-1	답	" 213-4	전
		16	"	70	" 120	답	" 166	전
		18	"	480	" 233-1	전	" 산 9 - 3	임
		19	"	80	" 225-4	답	" 336-7	대
		20	"	200	" 225	답	" 8	임
		21	"	245	" 산 8	임	" 234-2	전
		24	"	90	신정동 697-5	대	신정동 711	전
		25	"	90	" 684-6	전	" 768	전
		26	"	105	" 665	답	" 669	답
		27	"	310	" 564-8	전	" 663	전
		28	"	362	신월동 산 142	임	" 657	구
		29	"	80	신정동 806-3	답	" 803	답



등급	류별	번호	특원	연 장	기	점	종	점
소	3	30	6	70	신정동 810	답	신정동 820	전
		32	"	56	" 722	답	" 721	답
		33	"	130	신월동산 145	임	신월동산 154-1	임
		34	"	100	" 360-5	전	" 65-4	임
		35	"	40	" 88	임	" 88	임
		36	"	50	" 85-7	임	" 84-1	임
		37	2	105	고척동 216-1	대	고척동 167-35	대
		38	"	150	신정동산 106	임	개봉동 244-2	전
소	계			6,867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제 4 호

도시계획 ( 학교 )  
사업일부완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제 157 호 ( 73. 9.26 ) 로 사업시행허가된 도시계획 ( 학교 ) 사업의 일부 준공을 도시계획법 제 46 조 제 3 항 및 동법 제 85 조 제 1 항의 규정과 건설부고시 제 123 호 ( 73.4.4 )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당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및 관할구청 시민봉사실

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4. 1. 10.

서울특별시

- 1.. 사업시행지 : 시내도봉구쌍문동 414 의 11 의 90 필지
2. 사업명 : 도시계획 ( 학교 ) 사업시행
3. 준공면적 ( 일부준공 ) : 43,894 평 ( 총면적 44,203 평중 )
4. 사업시행자 : 학교법인 덕성학원 이사장 송 금 선
5. 사업기간 : 착공 : 73. 9.28 ~ 1982.11.30. 까지
6. 일부준공일 : 1973.12.17
7. 일부준공도면 : 별첨도면 ( 생략 )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평 수	비 고
1	도봉구 쌍문동	428 - 10	답	37	
2	"	428 - 11	전	288	
3	"	428 - 12	답	273	
4	"	428 - 13	"	786	
5	"	428 - 14	전	789	
6	"	414 - 11	답	103	
7	"	418 - 1	전	84	
8	"	418 - 2	"	351	
9	"	418 - 3	"	66	
10	"	418 - 4	"	252	
11	"	418 - 5	"	117	
12	"	419 -	"	183	
13	"	420 -	임	570	
14	"	421	전	2,745	
15	"	426 - 1	임	3,770	
16	"	427 - 2	"	5,250	
17	"	427 - 3	"	15	
18	"	427 - 4	전	169	
19	"	427 - 5	답	235	
20	"	427 - 6	"	274	
21	"	427 - 7	"	30	
22	"	427 - 8	"	147	
23	"	427 - 9	"	129	
24	"	427 - 10	"	196	
25	"	427 - 11	전	848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평수	비고
26	도봉구쌍문동	427 - 12	전	698	
27	"	427 - 13	"	397	
28	"	427 - 14	"	79	
29	"	427 - 15	"	141	
30	"	428 - 16	답	762	
31	"	428 - 17	"	705	
32	"	428 - 18	"	522	
33	"	428 - 19	전	561	
34	"	428 - 20	답	813	
35	"	429	"	130	
36	"	430	"	461	
37	"	433	"	1,084	
38	"	434	"	1,425	
39	"	435	"	85	
40	"	436	전	768	
41	"	437 - 1	"	59	
42	"	437 - 2	"	255	
43	"	437 - 3	"	621	
44	"	438	"	580	
45	"	439	"	628	
46	"	440 - 1	"	670	
47	"	440 - 2	"	326	
48	"	441	"	316	
49	"	498 - 9	답	534	
50	"	498 - 12	"	405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평수	비고
51	도봉구 쌍문동	498 - 13	답	408	
52	〃	498 - 15	〃	147	
53	〃	498 - 16	〃	1,006	
54	〃	498 - 17	〃	168	
55	〃	498 - 19	〃	240	
56	〃	498 - 20	〃	129	
57	〃	498 - 21	〃	232	
58	〃	498 - 22	〃	651	
59	〃	498 - 23	전	4	
60	〃	498 - 24	답	646	
61	〃	498 - 25	〃	510	
62	〃	498 - 26	〃	213	
63	〃	498 - 27	〃	10	
64	〃	427 - 16	전	225	
65	〃	427 - 17	답	52	
66	〃	427 - 23	전	72	
67	〃	427 - 24	〃	67	
68	〃	427 - 25	답	1,023	
69	〃	427 - 27	〃	11	
70	〃	427 - 28	〃	35	
71	〃	427 - 29	전	711	
72	〃	427 - 30	답	218	
73	〃	427 - 31	〃	187	
74	〃	427 - 32	〃	28	
75	〃	427 - 34	〃	5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평수	비고
76	도봉구 쌍문동	428 - 1	전	678	
77	〃	428 - 2	〃	2,019	
78	〃	428 - 3	답	26	
79	〃	428 - 4	답	39	
80	〃	428 - 5	전	57	
81	〃	428 - 6	답	750	
82	〃	428 - 7	전	159	
83	〃	428 - 8	답	741	
84	〃	428 - 9	〃	246	
85	〃	498 - 29	〃	272	
86	〃	499 - 3	전	207	
	〃	하천부지	(천)	803	
	소계			1,282	
	계			43,727 평	
	추가필수				
88	도봉구 쌍문동	498 - 28	답	17	
89	〃	498 - 18	〃	20	
90	〃	427 - 33	〃	40	
91	〃	426 - 2	임	39	
87	〃	427 - 36	대	51	
				소계 167	
총 계				43,894 평	
도로 및 구거(잔여) 평수				309 평	
총 91필지				44,203 평	

◎ 서울특별시 공고 제 5 호

'74. 쓰레기 특별청소지역 지정공고  
오물청소법 시행규칙 제 1 조에 의하  
여 아래 지역을 쓰레기 특별청소 지역

으로 지정 공고한다.

1. 지정 시기 74. 1. 10
2. '74 쓰레기 특별청소지역 지정내역 (별첨)  
1974. 1. .  
서울특별시강 양 택 식

'74 쓰레기 수거 지역 확장 지역

동수거 확장 지역

구 별	동 명	확장지역(동명)	세 대	인 구	1 일배출량	비 고
동대분	면 목 2 동	3	362	1,924	2.3 톤	
	면 목 3 동	4	270	1,360	1.6 "	
	면 목 4 동	1, 7	336	1,499	1.8 "	
	상 봉 동	2	359	1,808	2.2 "	
	중 화 동	1, 2, 4, 5, 12	1,679	8,184	9.9 "	
			3,006	14,775	17.8 "	
성 동	화 양 동	15, 19	727	3,571	4.3 "	
	중 곡 동	1, 2, 5, 7	772	3,913	4.7 "	
	구 의 동	2, 3, 4, 8, 19	981	4,827	5.8 "	
			2,480	12,311	14.8 "	
도 봉	창 동	5, 8, 19	1,439	9,524	11.5 "	
	상 계 3 동	14, 15, 16, 17	1,267	6,262	7.6 "	
			2,706	15,786	19.1 "	
서대분	상 암 동	4, 5, 6, 7, 8	1,157	5,946	7.2 "	

구 별	동 명	확장지역 (동명)	세 대	인 구	1일배출량	비 고
영 동 포	가 리 상 동	2.3	670	3,350	4.1톤	
	시 흥 1 동	7.8	175	937	1.1톤	
	개 봉 동	2.3.10	336	1,640	1.9톤	
			1,181	5,927	7.1톤	
관 악	봉 천 1 동	26.27	602	3,519	4.3톤	
	봉 천 2 동	18.19.21.25.26	663	2,369	2.9톤	
	봉 천 4 동	1.2	715	4,710	5.7톤	
			1,980	10,598	12.9톤	
은 평	불 광 2 동	12.13	280	1,414	1.7톤	
천 호	거 여 동	5.6.7.8	1,001	5,254	6.4톤	
영 동	청 담 동	3.11	368	1,845	2.2톤	
	신 사 동	2.6	407	2,616	3.2톤	
			775	4,461	5.4톤	
양 서	공 향 동	9	285	1,635	2.0톤	
	화 곡 1 동	24	360	1,010	1.2톤	
			645	2,645	3.2톤	
계	23 개 동	61 개 동	15,211	79,117	95.7톤	

28 23

사 명

◎ 1974.1.6.

영등포구 보건소 지방보건기

한중석

지방공무원법제 69 조 1.2 호에 의하여 견책에 처함

영등포구보건 소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보건소 지방보건기 원보

박종진

지방공무원법제 69 조 1.2 호에 의하여 견책에 처함.

성동구보건소근무를 명함.

종로구보건소 지방약무기 원보

이광재

지방공무원법제 69 조 1.2 호에 의하여 감봉 1월에 처함.

정신병원근무를 명함.

종로구보건소 지방보건기 원보

김정구

지방공무원법제 69 조 1.2 호에 의하여 감봉 1월에 처함.

종로구보건소근무를 명함.

성북구보건소 지방약무기 원보

김덕호

지방공무원법제 69 조 1.2 호에 의하여 감봉 1월에 처함.

서대문병원근무를 명함.

성북구보건소 지방보건기 원

전재휘

지방공무원법제 69 조 1.2 호에 의하여 견책에 처함.

성북구보건 소근무를 명함.

남부병원 지방보건기 사보 강 상 구

지방공무원법제 69 조 1.2 호에 의하여 견책에 처함.

남부병원 근무를 명함.

아동병원 지방보건기 사보 김 병 주

지방공무원법제 69 조 1.2 호에 의하여 견책에 처함.

아동병원근무를 명함.

◎ 1974.1.10.

관악구 지방건축기원 이 일 섭

청소 2 과 파견근무를 해제함.

농촌지도소 농촌지도사보 전 은 철

농림기사보에 임함.

6 호봉을 급함.

북부농지사업소근무를 명함.

농촌지도소 농촌지도원보 신 기 원

농림기원보에 임함.

3 호봉을 급함.

영등포구근무를 명함.



북부녹지 사업소	농림기사보	전은철	개량 2 과	지방타지원	권애원
지방농림기사보에	입함.		동대문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6호봉을	급함.		양정 과	지방타지원	조난희
북부녹지사업소	근무를	명함.	성동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지방타지원	노월우	녹지 과	지방타지원	한영남
총무과	근무를	명함.	업무과	근무를	명함.
중구	지방타지원	정복기	안전담당관실	지방타지원	고명혜
수도사업소	지방타지원	정복기	성동구	근무를	명함.
총무과	근무를	명함.	구획정리 1과	지방타지원	이현자
수도관리	지방타지원	김우희	종로구	근무를	명함.
사업소	지방타지원	김우희	영등포구	지방타지원	심재순
총무과	근무를	명함.	용산구	근무를	명함.
공업 과	지방타지원	이숙자	서대문구	지방타지원	황갑래
성동구영동출장소	근무를	명함.	수도사업소	지방타지원	황갑래
청소제 2과	지방타지원	박춘일	영등포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수도관리사업소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지방타지원	박신자
토목 과	지방타지원	조정자	보건소	지방타지원	박신자
경리과	근무를	명함.	중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건축 과	지방타지원	김경자	중구보건소	지방타지원	김화자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공 원 과 지방농림 기 사 보	주 한 식	의하여 감봉 3월에 처함.
지방공무원법제 69 조 1, 2 호에 의하여 파면에 처함.		조경과 근무를 명함.
동 대 문 구 지방농림 기 사 보	이 용 덕	어린이대공원 지방농림 기 사 보 이 광 옥
지방공무원법제 69 조 1, 2 호에 의하여 파면에 처함.		지방공무원법제 69 조 1, 2 호에 의하여 감봉 3월에 처함.
영 등 포 구 지방농림 기 사 보	문 판 식	녹 지 과 지방농림 기 사 보 조 남 천
지방공무원법제 69 조 1, 2 호에 의하여 파면에 처함.		지방공무원법제 69 조 1, 2 호에 의하여 견책에 처함.
종 로 구 지방농림 기 사 보	황 규 준	녹지과 근무를 명함.
지방공무원법제 69 조 1, 2 호에 의하여 파면에 처함.		녹 지 과 지방농림 기 사 보 용 환 운
어린이대공원 지방농림 기 사 보	정 선 용	의하여 견책에 처함.
지방공무원법제 69 조 1, 2 호에 의하여 감봉 6월에 처함.		녹지과 근무를 명함.
어린이대공원 근무를 명함.		어린이대공원 지방농림 기 사 보 유 원 준
북부녹지사업소 부 지방농림 기 사 보	강 기 호	의하여 견책에 처함.
지방공무원법제 69 조 1, 2 호에 의하여 감봉 6월에 처함.		어린이대공원 근무를 명함.
북부녹지사업소 근무를 명함.		공 원 과 지방농림 기 사 보 피 상 진
조 경 과 지방농림 기 사 보	장 해 진	의하여 감봉 6월에 처함.
지방공무원법제 69 조 1, 2 호에		녹 지 과 지방농림 기 사 보 이 희 봉

<p>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 2 호에 의하여 감봉 3 월에 처함.</p>	<p>지방지적기사보에 임함. 6 호봉을 급함. 성동구 근무를 명함.</p>
<p>◎ 1974. 1.11 용산구 지방의무 보건소소장 김 병 용</p>	<p>◎ 1974. 1.15 경남마산시 지방행정 서 황 차 응</p>
<p>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기획정리 1 과 기한부지방 토목기원보 김 인 환</p>	<p>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서기에 임함.</p>
<p>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서대문구 지방간호 보건소 기사 박 병 회</p>	<p>2 호봉을 급함. 은평출장소 근무를 명함.</p>
<p>지방공무원법 제 63 조 제 1 항 제 1 호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p>	<p>경남마산시 지방행정 서 이 택 구</p>
<p>기획정리 1 과 지방토목 기원보 서 승 인</p>	<p>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서기에 임함.</p>
<p>복직을 명함. 4 호봉을 급함.</p>	<p>2 호봉을 급함.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p>
<p>기획정리 1 과 근무를 명함. 농지과 지방농림 사방조림계장 이 농 성</p>	<p>충남서산군 행정주사보 문 태 진</p>
<p>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북부농지사업 지방농림 소장 박 중 환</p>	<p>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서기에 임함.</p>
<p>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p>	<p>9 호봉을 급함. 성북구 근무를 명함.</p>
<p>◎ 1974. 1.12 성동구 지적기사보 박 진 상</p>	<p>경북예천군 지방행정 서 김 대 호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p>

지방행정서기에 임함.		의약과장 의무기정 신현삼
2호봉을 급함.		용산구 보건소장 직무대리를 명함.
성북구 근무를 명함.		서대문병원 지방의무정 이인식
경북의성군 지방행정서기	황재학	마포구 보건소장에 임함.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마포보건소장 지방의무정 백용기
지방행정서기에 임함.		의약과장 직무대리를 명함.
4호봉을 급함.		
성북구 근무를 명함.		허윤
강원도평창군 지방행정서기	지준길	지방토목기원보시보에 임함.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1호봉을 급함.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성북구 근무를 명함.
3호봉을 급함.		김세열
성북구 근무를 명함.		지방기체기원보시보에 임함.
경북영주군 지방행정서기	김익	1호봉을 급함.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자동차운수사업소 근무를 명함.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시욱자
5호봉을 급함.		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1호봉을 급함.
경남남해군 지방행정주사보	김재전	영등포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임정자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
5호봉을 급함.		1호봉을 급함.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마포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장

(정정) 시보 제 424 호 ( 74.1.4 자 ) 일자 73.12.31 은 73.12.29 일의  
중 '고시 제 213 호 예산고시'의 고시 착오임에 정정함.